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93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김예지・박덕흠・강기윤

최승재 • 구자근 • 엄태영

추경호 · 이명수 · 김성원

이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준적합성심사가 설치기준 적합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도서 지역 관광객 등 수상교통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바목 및 제12조).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 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바. -----제2조제2호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및 제3호에 따른 무역항 및 있는 항만시설 여아하-----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생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략) <신 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